

행 정 자 치 부

시정 · 주의 요구

제 목 ○○~○○간 도로·확포장(지방도000호)공사 업무추진 소홀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

내 용

강원도 ○○○○과에서는 ○○~○○간 확·포장(지방도 000호선)공사를 2010. 4. 29. ○○○○(주) 대표 ○○○ 외 1개사와 39,555,349천원 계약하여 추진 중 현재 47%의 공정이 진행중이다.

「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로 확·포장사업과 같이 장기간이 소요되고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계속비 등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거나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강원도 ○○○○과에서는 2010. 5. 10.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도 000호선 ○○~○○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개별공사를 이행하도록 하는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면서 매년 35억원 내지 97억원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여 왔다.

[표] 계약현황

구분	용역·공사명	용역·공사개요	계약금액 (천원)	계약기간 (계약일자)	수급자		발주처
					업체명	대표자	
감리	○○~○○간 도로확포장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책임감리 1식	3,165,000	2010.6.16. ~ 2017.6.8. (2010.6.16.)	(주)○○○○○○ (주)○○엔지니어링 (주)○○	○○○ ○○○ ○○○	강원도
공사	지방도000호선 ○○~○○(○○)간 도로확포장공사	도로확포장 L=0.0km	46,625,887	2010.5.10. ~ 2017.4.2. (2010.4.29.)	○○○○(주) ○○○○(주)	○○○ ○○○	강원도

[표] 년도별 사업비 투입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비	3	35	50	46	51	57	97

그 결과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7. 4. 2. 임에도 감사일 현재 사업추진 공정율이 47%로서 공사완료를 위해서는 389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여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계약기간이 36개월 연장될 경우 감리비 412백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간접비용 발생에 따른 시공사와 분쟁 발생이 우려된다.

[표] 감리비 추가소요 내역

구분	계약기간	감리비(천원)	증·△감	비 고
계약현황	2010.6.16. ~ 2017.6.8.(85개월)	3,165		
공기연장	2016.6.16. ~ 2020.6.8.(121개월)	3,577	412	

또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미끄럼방지포장의 기본적인 설치장소로는 설계속도 60km/hr 이상의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접근부, 설계기준 이하의 곡선반경 설치장소, 내리막경사가 급한 구간 등에서 최소요구 마찰계수가 낮은 곳으로 하며,

도로관리청이 본 기준과 미끄럼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실적을 토대로 판단하여 꼭 필요한 장소에만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신설도로(덧씌우기 포함)로서 도로의 구조 조건이 설계 기준치 이상이고 노면상태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별도의 미끄럼 방지포장은 설치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도 000호선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차로 신설 도로로써 일부 위험한 구간을 제외한 일반 구간에 미끄럼방지포장의 설치는 적절치 않는데도 도로종단경사가 급하지 않은 구간에 미끄럼방지포장 3,366㎡를 포함하여 설치 (총 7,161㎡)하는 것으로 설계에 불필요하게 반영함여 따라 194,250천원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상 한 사실이 있다.

아울러 사업구간 중 대절토사면(Sta 7+140 ~ 7+840)의 경우는 도로선형을 계곡부 방향으로 2m~4m 이동하는 것으로 선형을 변경하면 공사중 사면의 붕괴위험을 해소할 수 있고 절개지 산림훼손 면적을 축소할 수 있으나,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경훼손이 크며 절토작업 중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과 추가 예산 53,658천원 상당이 발생되어 예산을 낭비 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

[시정] 도로경사가 급하지 않은 구간에 반영된 미끄럼 방지포장과 대절토사면 구간에 대한 도로선형 변경 등을 통하여 과다 계상된 공사비 250백만원 상당을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방도 확·포장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장기간 및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득하여 추진하여 사업비 부족 사유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